

전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5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578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954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대일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변론종결 2021. 10. 14.

판결선고 2021. 12.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954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전주시 덕진구 E 대 34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유한회사 F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6. 6. 27. 접수 제688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 D는 피고 B에게 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 5. 접수
제1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